

소방용기계·기구등의 규격 및 검정에 관한 규칙 개정

1986. 7. 19 내무부령 제446 호로 동규칙이 개정 공포되었다.

규칙 제503 조와 부칙 제5조(개정전 구법은 제395 조)로 되어 있으며 개정 이유및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1. 개정 이유

소방용 기계·기구의 발달에 따라 그 규격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정비하고,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형식 검정을 종전에는 1 차 검정과 2 차 검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로 통합하여 실시함으로써 형식 검정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형식검정을 종전에는 1 차 검정과 2 차 검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하나로 통합하여 실시함으로써 형식 검정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함(영 제2 조)

나. 소방용 기기등에 사용되는 부품중 공인된 규격품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소방용 기기등의 품질 향상을 도모함(영 제12조).

다. 소방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소화기 가압용 가스 용기가 독립한 검정 대상 품목으로 됨에 따라 소화기 가압용 가스 용기에 대한 기술 기준을 신설함(영 제2 장 제4절장 제4 절).

라. 경사 강하식 구조대의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포지의 강도, 마모 강도, 수축율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정함(영 제330 조 내지 제333 조).

마. 기타 소방용 기계·기구의 발달에 따라 그 규격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정비하고, 체제를 전반적으로 정비함(영 제2 장 내지 제11장).

◇ 이와 함께 관계 법령도 일부 개정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부칙 제6 조).

① 소방법 시행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 제26조 제2 항 제4호 중“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서 또는 양도·양수 계약서”로 한다.

동 제28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동 제28 조 (제품의 생산 종용) 내무부 장관은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이 있는 때에는 동종의 제조업자에 대하여 그 제품을 생산하도록 종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조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별표3의 공사업 제1종(기계분야) 란중 “영 제13 조 제1 항 제2 호”를 “영 제13 조 제1 항 제1호”로 하고, 정비업 제1종(기계분야) 란중 “그 소화기구 정비(약제 충전을 포함한다)”를 삭제한다.

② 소방 시설의 설치·유지 및 위험물 제조소 등의 시설의 기준등에 관한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 제135 조 제1 항 제1 호 및 제5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비상 콘센트 설비의 전원 회로는 3상 교류 380볼트인 것과 단상 교류 100볼트 또는 220볼트인 것으로서, 그 공급 용량은 3상교류의 경우 3KVA 이상인 것과 단상 교류의 경우 1.5KVA 이상인 것으로 할 것.

5. 콘센트마다 배선용 차단기 (KSC 8321) 를 설치하여야 하며,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동 제135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비상 콘센트의 플러그 접속기는 3상교류 380볼트의 것에 있어서는 접지형 3극 플러그 접속기(KS C 8305) 를 단상 교류 100볼트 또는 단상교류 220볼트의 것에 있어서는 접지형 2극 플러그 접속기 (KS C 8305) 를 사용하여야 한다.

화재 보험 요율 개정

화재 보험 요율이 일부 개정되어 1986년 9월 15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변경된 내용은 주로 II. 建物規定에서 用語의 定義가 보완되고 工場物件에서 複合構造建물이 새로이 도입되었다.

이번의 요율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요율적용에 관한 문제점은 별로 진전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요율서의 적용상 문제점은 앞으로 본 지부에서 제출된 문제점을 취합하여 보험공사의 유권 해석을 받아 적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우선 문제점을 몇 가지만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건물의 구조급별 중 1급~3급구조 적용 (요율서 P. 23~P. 24) 에서 외벽의 구조중 “이와 동등 이상으로 인정되는것” 으로 되어 있으나 기준이 되는 외벽의 시험 내용이 있어야 하고 기타의 재료를 이 기준에 맞추어 시험을 하고 또 인정할 수 있는 시험 기관이 지정되어야 하는데 신공법에 의해 신재료가 사용된 구조 부분의 급수산정을 위해서도 조속한 보완책이 만들어져야 하겠다.

예조에 요산회로부터 요율 개선안을 당협회로 검토 의뢰하여 왔을 때 협회 방재 시험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였으나 금번에는 반영이 되지 않은 채 개정이된 것으로, 차기에 반영이 되리라고 판단된다.

2. 내화 구조의 정의 중에서 “조적의 기둥” 이 있으나 조적조 기둥의 최소 단면적은 정해져야겠다. 예를 들어 1급 구조의 건물에서 조적조의 내력벽은 30cm 이상의 두께를 가져야 하나 벽두께 20cm인 경우는 조적조 기둥과 조적조 보를 설치하더라도 벽자체가 내력벽인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생각되는 바 기둥의 최소 단면적이 정해져야 하겠으며 조적조 보는 무의미하다.

3. 무벽 건물 (요율서 P. 24) 에서 주요 구조부재가 콘크리트조 또는 조적조이고 외벽이 50% 이상인 경우는 1급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고층 건물에서 유리벽 적용 건물은 1급과 2급의 평균치를 적용토록 하는 것과는 크게 상치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무벽 건물에서 1급건물은 적용치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공동 주택 관리규칙 개정

주택 건설 촉진법 및 공동 주택 관리령의 시행을 위한 공동 주택 관리 규칙이 일부 개정되었다.

건설부령 제408 호로 1986년 9월 23일 공포된 동 규칙이 개정 이유 및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1. 개정 이유

공동 주택의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공동 주택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기준을 일부 강화하고 사업 주체의 주요 기본 공사에 대한 하자 보수 책임 기간을 일부 연장하며, 주택 관리인의 업무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